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12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정희용·서천호·김선교

강승규 • 박덕흠 • 송언석

박준태 • 박충권 • 김성원

백종헌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 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 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음. 보행지도사는 점역·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제71조제1항).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로, "점역(點譯)·교정사"를 "점역(點譯)·교정사, 보 행지도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
성 등) ① 국가와 <u>지방자치단</u>	성 등) ① <u>지방자치단</u>
<u>체 그 밖의 공공단체</u> 는 의지·	체, 그 밖의 공공단체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	
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	
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	점역(點譯) • 교정사, 보행
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	<u> 지도사</u>
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	
에 노력해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